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성군의회의회장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산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림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업작업 대행단의 설치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장애 등 취약 임업인 우선선정 특례와 실비주의 대행료 산정·반환 기준을 조례 본칙에 확립하여 관내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업작업 대행단 관련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제7호)
- 나. 지원사업 범위에 임업작업 대행사업 신설(안 제5조제1항제8호)
- 다. 임업작업 대행단의 설치·운영, 민간 위탁 근거, 취약 임업인 우선선정, 안전수칙 준수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라. 입법작업 대행료 부과·징수, 실비 한도 산정 원칙, 귀책별 반환 기준,
사전 공고 의무 신설(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법인이나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

-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2) 연락처: (055)670-5766, 팩스: (055)670-5759, 이메일: m66661476@korea.kr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1호”로, “신지식인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작업”이란 임산물의 생산·재배 및 관리, 임업용 기계·장비를 활용한 작업, 임산물의 운반·집하 등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5. “임업작업 대행”이란 임업인이 신청하는 임업작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업작업 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이란 임업인의 임업작업을 대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임업작업 대행료”란 임업작업 대행을 받은 임업인이 그 대가로 부

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4조”를 “「산지관리법」 제4조”로, “목적에”를 “목적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에 있어서”를 “선정의 경우”로 한다.

8. 임업인의 임업작업 대행사업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업작업 대행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임업인의 임업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행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임업 관련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령, 장애,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임업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임업인을 임업작업 대행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대행단 및 임업작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대행작업의 세부 종류, 신청 절차 및 대행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임업작업 대행료) ① 군수는 임업작업 대행을 받은 임업인에게 대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단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대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료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기계·장비 사용비 및 운반비 등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의 종류·난이도 및 작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임업작업 대행이 취소되거나 대행작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작업의 일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행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대행작업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세부 산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대행료의 반환 절차 및 그 밖에 대행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3. ----- ----- ----- 「신지식농업인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 신지식농업인----- --.
<신설>	4. “임업작업”이란 임산물의 생산·재배 및 관리, 임업용 기계·장비를 활용한 작업, 임산물의 운반·집하 등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신설>	5. “임업작업 대행”이란 임업인이 신청하는 임업작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6. “임업작업 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이란 임업인

<신 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 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 안의 주택전원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다만, 산지소유자인 임업인등이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8. (생략)

의 임업작업을 대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임업작업 대행료”란 임업작업 대행을 받은 임업인이 그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산지관리법」 제4조-----
----- 목적을 -----

-----.

-----.

8. 임업인의 임업작업 대행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 설>

② -----

----- 선정의 경우 -----

-----.

제5조의2(임업작업 대행단의 설치

· 운영) ① 군수는 임업인의 임업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행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임업 관련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령, 장애,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임업작업을 수행하

<신 설>

기 어려운 임업인을 임업작업
대행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대행단 및 임업작업 대행업
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⑥ 대행작업의 세부 종류, 신청
절차 및 대행단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
다.

제5조의3(임업작업 대행료) ① 군
수는 임업작업 대행을 받은 임
업인에게 대행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2제
2항에 따라 대행단의 운영을 위
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
금 대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
다.

② 대행료는 해당 작업에 필요
한 인건비, 기계·장비 사용비
및 운반비 등 직접 소요되는 비
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의 종류·난이도
및 작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

③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임업
작업 대행이 취소되거나 대행작
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대행작업의 일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
에 해당하는 대행료를 반환하여
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대행작업이 전혀 이
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세부
산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대행
료의 반환 절차 및 그 밖에 대
행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
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 요인: 안 제5조제1항제8호
- 소요예산: 총 50,000천원
 - 안 제5조제1항제8호: 임업인의 임업작업 대행사업
⇒ 임업 농작업 대행단 시범운영(예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녹지공원과장 김 주 화

관 계 법 령(발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3. “전문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7. “산림소유자”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9.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주 소 :
- 연 락 처 :
- 의견 내용(찬·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이유
	찬성	반대		